

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64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1. 9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새로운 위원 모집이 어려워 주민자치회 구성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 수가 최소 정원(30명)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,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 모집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만 연임할 수 있으나,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 수가 최소 정원에 미달한 경우,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 가능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8. 12. ~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,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|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<u>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</u> <u>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</u> <u>의 최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,</u> <u>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</u> <u>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</u> <u>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</u> <u>있다.</u> |

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위원 임기 연임 관련 개정으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- 자치행정과 행정7급 모운숙 ☎ 02-2286-5148

< 관 계 법 규 >

□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